

식품등의 재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영업자)	명칭(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재검사 대상 제품	명칭	제조회사 명칭(상호)
	식품 유형(식품만 해당합니다)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부적합 검사항목	

「식품위생법」 제2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등의 재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자료	1. 「식품위생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 2. 「식품위생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3. 제2호에 따른 검사 제품이 제1호에 따른 검사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임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액
------	---	---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